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개정의 효과

정영재*, 박희서**

The Effects of the Revi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evant Laws based on the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ung, Youngjae *, Park, Hwieseo **

요약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Abstract

On July 23th, 2009, the newly-revised copyright law was reflected the free trade agreement which occurr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agreement is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competition as well as the social efficienc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Nevertheless, Korean government should pay much costs, Therefore, we should minimize the cost in a short run and maximize the benefits we could obtain out of the agreement in a long run. However, we are not prepared to improve economic valu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pecific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spects of law execution to protect not only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we manage to get the utmost out of the agreement, we could be going through the transition from a consumer n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to a producer nation.

• 제1저자 : 정영재 교신저자 : 박희서

• 투고일 : 2009. 08. 07, 심사일 : 2009. 08. 09, 게재확정일 : 2009. 08. 15.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 Keyword : 한미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저작권법(Copyright Law), 법집행(Law Execution),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I. 서론

2009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2009년 4월 22일 개정).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은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인 지적재산이 그것을 고안하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한 재산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300년 전인 1710년 앤여왕법(Statue of Anne)이 제정되면서이다. [1]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로서, [2] 이들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이 인정된 이래로 국가 간 무역에 있어 각국은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또한 국가 간 교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적 운동과 더불어 통상정책분야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은 세계 각국 또는 각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2007년 체결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있어 상표등록 및 저작권 보호 관련 미국의 요구사항은 비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상표등록의 허용, 저작권 및 저작권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보호와 같은 실제적 규정뿐만 아니라 범접손해배상, 비밀유지명령과 같은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뿐만 아니라 상표법까지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수준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과 실태는 전세계적인 세계화 운동, 특히 문화의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에 동참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이나 협상중인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체결에 있어서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86년 8월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 지적재산권 양해각서'에서 출발한다. [3] 이후 우리나라는 특허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수차례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등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제도적 변화를 경험했다.

본 논문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법률(저작권법과 상표법)상의 후속조치 등을 살펴본 후 이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관련조항 및 관련법률 개정사항

1.1. 한미 자유무역협상과정과 지적재산권의 쟁점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2004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련 장관회담에서 추진가능성에 대한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후 2005년부터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와 4차례의 통상장관회담 등을 거친 후 2006년 2월 자유무역협정추진을 발표하였다. 이후 8차례의 공식협상과 통상장관 회의 등을 통해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되어 6월 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9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년 2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추진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콘텐츠 개발노력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국과의 무역협상에 있어 자국의 지적 재산권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보유량과 질적 측면의 우위에 따른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비시각적 상표의 등록허용, 불법복제의 범위확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령 및 단속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적 재산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였다. 지적재산권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경과
Table 1. The process of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일자 | 추진내용 |
|------------------|-------------------------------|
| 2003.08 | "FTA 추진 로드맵" 마련 |
| 2004.05 |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
| 2004.11 |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
| 2005.02.03 | 한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
| 2005.03.28~29 |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
| 2005.04.28~29 |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
| 2005.05.02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
| 2005.06.03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
| 2005.07.24~28 |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실득 |
| 2005.09 |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
| 2005.09.19~21 | 본부장 방미, 주요 정부관계자 면담 |
| 2005.09.20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
| 2005.10.11 |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
| 2005.11.16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
| 2006.01.31 | 본부장-Portman USTR 대표 면담 (워싱턴) |
| 2006.02.02 |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 2006.02.03 | 한-미 FTA 추진 발표 (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
| 2006.03.06 | 한-미 FTA 제 1차 비공식 사전준비회의 개최 |
| 2006.04.17~18 | 한-미 FTA 제 2차 비공식 사전준비회의 개최 |
| 2006.06.05~09 | 한-미 FTA 제 1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
| 2006.06.27 |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 2006.07.10~14 | 한-미 FTA 제 2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
| 2006.09.06~09 | 한-미 FTA 제 3차 공식협상 개최 (시애틀) |
| 2006.10.23~27 | 한-미 FTA 제 4차 공식협상 개최 (제주) |
| 2006.12.04~08 | 한-미 FTA 제 5차 공식협상 개최 (몬타나) |
| 2007.01.15~19 | 한-미 FTA 제 6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
| 2007.02.11~14 | 한-미 FTA 제 7차 공식협상 개최 (워싱턴) |
| 2007.03.08~12 | 한-미 FTA 제 8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 |
| 2007.03.19~22 |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워싱턴) |
| 2007.03.26~04.02 |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서울) |
| 2007.04.02 | 한-미 FTA 협상타결 |
| 2007.05.29~06.06 | 법률검토회의(워싱턴) |
| 2007.06.21~22 | 추가협회의(서울) |
| 2007.06.25~26 | 추가협회의(워싱턴) |
| 2007.06.30 | 한미 FTA 서명(워싱턴) |
| 2007.09.07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 2008.02.13 |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 |
| 2008.02.15 |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출처: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

1.2. 지적재산권 관련조항 및 관련법률 개정사항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제 18장이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조항으로서 협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의 상표법에 대해 소리나 넘새 등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요구하여 기존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상표만을 등록허용하던 상표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4] 현재의 상표법에는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상표만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정에 따라 상표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저작권과 저작권집권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미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권집권자의 사후 또는 실연이나 음반의 고정 후 70년의 연장을 요구하였으며 협정내용에 반영되었다.[5] 저작권 및 저작권집권의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다. 협상결과 저작권과 저작권집권의 보호기간의 연장에는 합의하였으나 보호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은 국가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기간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를 규정[6]하였으며, 갑작스런 저작권자 사후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셋째, 미국은 우리나라에 일시적 저장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 영구적 또는 일시적 저장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7] 이에 따라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고 삭제하는 행위 및 전원이 차단되면 사라지는 특성을 가진 휘발성 저장장치인 컴퓨터의 RAM에 대한 저장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되도록 요구하여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넷째, 저작물에 대한 이용통제(use control)적 기술조치 뿐만 아니라 접근통제(access control)적 기술조치[8]도 보호대상에 포함하였으며[[9], 암호기술 연구 등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9]를 열거하였다.

다섯째,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10]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제공명령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를 상대로 내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11]

이외에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문에 있어 미국 측의 요구내용을 수용하였으며 관련법 개정을 마쳤거나 준비하고 있다.

III.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수준과 단속

1.1. 지적재산권 침해수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경험했다. 정보통신기술의 이러한 급격한 발전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의 P2P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불법복제와 불법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콘텐츠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는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문화산업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감소할 경우 GDP 기여액은 1조 1,900억원이며 7,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6,300억원의 세수 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된다(실질적으로 큰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12])

〈표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변화추이
Table 2. The rate of illegal copy of software (단위: %)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한국 | 48 | 50 | 48 | 46 | 46 | 45 | 43 |
| OECD 평균 | 39.6 | 38.6 | 38.8 | 38.1 | 38.0 | 37.6 | 35.9 |

출처: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8년 문화산업백서에서 재인용
(원전: Business Software Alliance(2008. 5))

우리 국민의 온라인 음악콘텐츠 이용실태를 보면 불법적인 음악파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을 사용한 경우가 2007년도에 42.8%에 달하고 있으며, 기술발전과 함께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영화의 경우에 있어서도 온라인에서 불법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이 2007년 43%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년도의 31.5%보다 심각하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007년 43%로 35.9%인 OECD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이며 2007년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5억 4900만 달러로 전체 OECD 국가 중 15위에 해당한다.[13]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및 지적 콘텐츠 선진국들은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1.2.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현황

미국은 한국을 지적재산권 침해의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에서도 관련법규 개정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단속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할자외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을 개정(2008년 6월)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단속의 권리를 가진 공무원의 범위를 문화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에서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를 설립(2005년 4월)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으로 확대하여 기관(2007년 2월)하였다. 2005년 이후 저작권보호센터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건수를 보면 2005년 음악관련 5,634건, 영상관련, 32,305건, 출판관련, 1,531건이었던 단속건수가 2007년에는 음악관련, 26,943건, 영상관련, 50,185건, 출판관련, 454건으로 출판관련 침해건수만 줄고 온라인상에서의 영상과 음악관련 침해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침해건수가 2005년에 비해 38,112건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상에서는 1,791건으로 줄어 온라인상에서의 침해건수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침해건수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프트웨어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연도별로 증가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2007년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26.59%로 2003년 이후 최고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저작권보호센터에 의한 연도별 불법 저작물 단속현황(표 3)과 2003년 이후 소프트웨어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현황(표 4)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연도별 불법 저작물 단속 현황
Table 3. Annual regulation of illegal copies

| 구분 | 장르 | 2005년 | | 2006년 | |
|------|-------|---------|------------|---------|------------|
| | | 건 | 점 | 건 | 점 |
| 온라인 | 음악 | 5,634 | 11,789,459 | 9,956 | 8,420,925 |
| | 영상 | 32,305 | 340,903 | 35,650 | 516,750 |
| | 출판 | 1,531 | 880,197 | 397 | 2,066,819 |
| | 계 | 39,470 | 13,019,559 | 46,003 | 11,004,494 |
| 오프라인 | 음악 | 2,180 | 300,556 | 666 | 88,722 |
| | 영상 | 422 | 80,729 | 500 | 106,584 |
| | 출판 | 583 | 29,939 | 419 | 13,365 |
| 계 | 3,185 | 411,224 | 1,585 | 208,671 | |
| 합계 | | 52,655 | 13,430,783 | 47,588 | 11,213,165 |

| 구분 | 장르 | 2007년 | | 2008년 4월말현재 | |
|------|-------|---------|------------|-------------|-----------|
| | | 건 | 점 | 건 | 점 |
| 온라인 | 음악 | 26,943 | 8,480,366 | 9,988 | 2,486,833 |
| | 영상 | 50,185 | 752,763 | 17,958 | 219,368 |
| | 출판 | 454 | 3,233,222 | 335 | 1,025,341 |
| | 계 | 77,582 | 12,466,051 | 28,281 | 3,713,542 |
| 오프라인 | 음악 | 398 | 32,917 | 128 | 13,548 |
| | 영상 | 474 | 77,126 | 256 | 72,501 |
| | 출판 | 522 | 10,068 | 339 | 6,814 |
| 계 | 1,394 | 120,111 | 723 | 92,863 | |
| 합계 | | 78,976 | 12,586,162 | 29,004 | 3,824,405 |

출처: 2008년 문화산업백서

〈표 4〉 연도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현황
Table 4. Annual regulation of illegal software

(단위: 건)

| 구분 | 단속 기관수 | 적발 기관수 | 설치 수량 | 정품 수량 | 복제 수량 | 복제율 (%) |
|------|--------|--------|---------|---------|--------|---------|
| 2003 | 1,760 | 1,186 | 180,590 | 154,074 | 25,516 | 14.68 |
| 2004 | 2,514 | 1,798 | 140,169 | 104,879 | 35,290 | 25.18 |
| 2005 | 2,537 | 1,556 | 146,903 | 116,163 | 30,740 | 20.93 |
| 2006 | 2,172 | 1,333 | 156,981 | 130,125 | 26,858 | 17.11 |
| 2007 | 2,090 | 1,424 | 143,916 | 105,644 | 38,272 | 26.59 |

출처: 2008년 문화산업백서

IV. 관련법률 개정효과

1.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긍정적 효과

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과 자국이 필요로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성이 낮으므로 대신에 다른 물건의 생산에 특화하고 무역을 통해 이를 간접

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의 최적조합을 가능케 함으로써 한 국가의 자원이 최대의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그것의 장점이 있다.[14] 자유무역은 위의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각 방식의 한계수익이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15]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소비자들은 보다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재산권 제도는 그 사회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다.[16]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은 개인의 배타적 재산권의 보호에 기반하며 무형의 재산권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제도의 차이 또한 사회를 결정짓는 데 예외는 아니다. 개별생산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나 혁신에 투자하지만[17] 남들이 쉽게 복사함으로써 자신이 생산한 상품으로부터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투자하지 않는다.[18] 법과 제도에 의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의 가치를 높임으로서 혁신과 창작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R&D에 대한 투자확대와 창작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게 되고 국가의 부의 창출에 기여한다.[19]

1.2.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자유무역의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의 우려가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재산권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보호하는 것은 재산권자가 독점적 위치를 고수하도록 하여 혁신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20] 과거 저작권자의 사후 또는 저작물의 고정 후 50년까지 보호되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사후 7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의 지나치게 오랜 기간동안의 보호가 될 수 있다.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사후 70년간의 보호는 저작물의 탄생 이후 실질적으로 몇 세대에 걸쳐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당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도화하였다.

둘째, 보호기간 적용의 국가 간 상호주의의 원칙과 조약가 입어부에 따라 시민들이 자신들이 이용하는 콘텐츠가 어느 나라의 지적 재산권인지 인지해야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제도 자체가 매우 복잡해졌으며,[21] 개정 전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소멸했다가 다시 부활한 지적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지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부지불식간에 침해하여 기업이 대부분인 지적재산권자로부터 개인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및 수수료, 변호사보수의 지급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22]하여 영세사업자나 개인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피소되었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이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셋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50년에서 70년까지 연장됨으로써 향후 20년간 캐릭터, 출판, 음악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해 연평균 총 71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분석되어 [23] 국내 저작권 산업이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과 그에 따른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단기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50년에서 70년으로의 연장의 유예기간이 2년으로서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사용자들이 적응하는 데는 다소 짧은 기간일 수 있다. 이미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취약하여 권리자들의 자력구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사용자 고소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만큼 [24] 정부가 변경된 법률과 제도를 홍보하고 사용자들이 인식하고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섯째, 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휘발성 저장장치인 RAM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의 저장 또한 불법화함으로써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지나친 주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휘발성 저장장치에 대한 다운로드조차 불법화하는 것은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불법복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모든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으며 불법복제의 단속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저장(cookies)이나 통신망을 통한 시스템 캐싱(system caching)과 같이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저장과 같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25]

여섯째, 저작권법의 개정내용이 저작물에 대해 지나치게 이용뿐만 아니라 접근자체를 통제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해 특허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 [26] 뿐만 아니라 접근자체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어 저작물을 이용한 아이디어의 개발과 기술의 발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일곱째, 상표등록에 대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뿐만 아니라 후각 또는 청각, 즉 비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상표까지 상표등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등록절차나 등록기록이 시각적으로 기록된 문서로는 저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비시각적 기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에 따른 기술적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덟째,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지나친 지원정책이 뒤따를 수 있다. 현재 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산업, 캐릭터산업 및 출판산업 등 각종 문화 콘텐츠 산업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실제로 영화산업진흥을 위해 중대형 영상투자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프로젝트 개발과 해외 마케팅 지원, 출판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분별한 지원은 정책의 대상자에게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의 유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정책이 규제적 속성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지원대상자에게 부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7]

V. 결 론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문화산업의 무역장벽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조류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반저작권 운동(copyleft movement)과 문화제국주의론(cultural imperialism)을 들 수 있다. 반저작권 운동은 지적재산은 재산권자 개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선대로부터 오랜 기간 축적된 지식에 기반하여 발전되고 혁신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을 고안했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타적 권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사회전체가 공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운동이다. 문화제국주의론은 각 국가나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보호하지 않은 채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것은 전세계의 문화가 미국 등 강대국 위주로 획일화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강대국인 미국적인 관점에서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이 재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은 적지 않다. 제도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남은 과제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

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지난세기 후반부터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운동과 더불어 국가 간 무역장벽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은 실질적으로 물류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더더욱 무역장벽이 낮다. 반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중 배제비용(exclusive cost)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지금까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할 배제비용의 부담이 낮아져 국경을 넘어서 거래가 과거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다.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대한 동참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경쟁을 촉진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의 측면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가진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높이고 지적재산의 개발을 유인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 이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토대로 외국과의 무역협상에 있어 우리의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미국과의 통상차찰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Thomas B. Nachbar,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stitutional Norms," *Columbia Law Review*, 104(2): pp.272-362, 2004.
- [2] Edwin C. Hettinger, "Justifying Intellectual Propert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8(1), pp.31-52, 1989.
- [3] 권인희, "FTA와 지적재산권," 한양법학, 2009.
- [4] 한미자유무역협정 제18.2조의 1.
- [5] 한미자유무역협정 제18.4조의 4.
- [6]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 [7] 한미자유무역협정 제18.4조의 1.
- [8] 한미자유무역협정 제18.4조의 7.

[9]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허용하는 경우는 ①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목적할 때(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② 기술의 흡결 및 취약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수행할 때(필요한 한도범위에서만 허용), ③ 온라인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④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⑤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를 반영하는 개인식 별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⑥ 법 집행·정보활동·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목적에 위해 적법하게 승인되어 수행할 때(정부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 ⑦ 저작물의 구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때(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 기관), ⑧ 비침해 이용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개인적인 부정적 영향이 입법 또는 행정절차에서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때 등이다.

[10] 한미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의 30.

[11] 저작권법시행령 제72조의 5.

[12]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백서," 2008.

[13] 2007년 불법복제를 보고서, Business Software Alliance, 2007, 2008년 문화산업백서 재인용.

[14] 최병선, "무역정치경제론", 서울: 박영사, 1999.

[15] Jagdish N. Bhagwati, Arvind Panagariya and T. N. Srinivasan, "Lectures on International Trade." 2nd Ed. Cambridge, Mass.: MIT Press, 1998.

[16] Edwin C. Hettinger, 전제논문, pp.31-52.

[17] Stanley M. Besen, & Leo J. Raskind. Introduction to the Law and Economic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1), pp.3-27, 1991.

[18] Kenneth J. Arrow, "Economic Welfare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 for Innovation,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The Rate and Direction of Inventive Activit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19] 최낙균·이홍식의,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Tim. Wu, "Intellectual Property, Innovation and Decentralized Decisions," *Virginia Law Review*,

- 92(1), pp.123-147, 2006.
- [20] Wolfgang Kasper, & Mafred E. Streit, “Institutional Economics: Social Order and Public Policy,” Northhamton, MA: Edward Elgar, 1999.
- [21] 저작권법 제3조.
- [22] 한미자유무역협정 제18.10조의 7.
- [23]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백서,” 2008.
- [24]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백서,” 2008.
- [25] 손승우, “한미FTA와 지적재산권의 미래: 저작권 협상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 연구,” 무역학회지, 33(3), pp.79-100, 2006.
- [26]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표현은 모든 시민들의 무료이용, 이른바 copyleft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27] 이혁우,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2009.
- [28] Richard White, “A Back Wash: The Australian Experience of Americanization,” Theory, Culture and Society, 1, pp.108-122, 1983.

저 자 소 개



정 영 재

2001년 2월: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2007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과정 수료
관심분야: 문화정책, 지적재산권



박 희 서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1989년~현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지식정보론, 마케팅, 정책학